

우리나라 법정계량제도

계량측정과 공업연구원 나기형
(02)509-7410 nakh@ats.go.kr

1. 계량제도의 의의

현대사회와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국가경제에서 상거래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그것은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상품의 거래량도 이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약 180조원의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의 거래오차는 1조 8천 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상품거래가 시작되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아왔는데 그것은 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래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각종 지도, 규제 및 단속제도가 생겨난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계량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계량역사는 삼국시대 신라에서 자(周尺18.19cm)를 만들어 길이의 기준으로(황동 종 제작에 이용) 사용한 것이 그 시효라 하겠으나, 계량이 본격화된 것은 조선시대 척관법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의 도량형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개화의 물결이 거세던 구 한말인 1906년에 대한제국의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을 제정한 것은 근대적인 계량제도의 확립은 물론 당대의 근대화 표상으로도

량형제도를 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도량형”이란 용어는 본래 중국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중국의 고전인 한서율력지(漢書律歷志)에 의하면 도(度)는 길고 짧은 것(長短)을, 양(量)은 많고 적음(多少)을, 형(衡)은 가볍고 무거운 것(輕重)을 재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량형이란 용어는 1961년에 계량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계량법은 5. 16혁명정부가 구법령(일본법, 총독부령, 미군정법령 등)의 정비 방침에 따라 새로운 법령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도량형법 대신 계량법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당시 계량법에서는 척관법 및 야드, 파운드법에 의한 단위는 1963년 12월 31일 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는 1983년 1월 1일 이 후부터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서는 국제단위계(SI)를 대폭 반영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측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많아지는 반면, 계량은 상거래에서 공정거래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수단으로 사용이 한정되면서 급기야 2000년 1월 21에는 계량은 “계량에관한법률”에 측정은 “국가표준기본법”으로 분리되어 서로가 각기 다른 법령 체계하에서 관리·운영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3. 우리나라 계량법의 주요 골자

가. 계량법의 체계

현재 우리나라 계량법의 체계는 계량법(전문 22조, 부칙 7조), 계량법시행령(전문19조, 부칙3조) 및 계량법시행규칙(전문37조, 부칙 6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계량법의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계량법은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과는 계량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접근방식이 상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계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량법의 근본목적이 다르다기 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관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계량법 제1조는 계량법의 목적으로서 “계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절한 계량을 실시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계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는 부분과 적절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계량의 기준을 정하는 부분은 “계량단위(기본단위,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의 표시방법과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및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수입금지, 계량의 정의 조항” 등이며, 적정계량의 실시 확보 부분은 “계량에 관한 사업, 검정 및 검정기준, 검정계량기(기준기 포함)의 종류, 힘량 또는 실량의 표시상품, 검정기관 지정, 사후관리,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조항” 등이 해당된다 할 수 있다



※ 참고로 다음에는 “ 계량행정조직의 체계 및 국내현황” “ 법정계량에 대한 국내의 동향” 및 “ 우리의 대응방안” 등의 순으로 게재할 예정이다.